

# 〈미국의 對韓정책사 자료 해제〉

정병준(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1. 휴전회담회의록

〈휴전회담회의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南北韓關係史料集》 제1—10집(1994)으로 간행된 자료이다. 이 자료의 원 제목은 〈1951-53년간 유엔군사령부 한국 휴전회담(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이다. 회의록의 원본은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Collegepark)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서군 333(Record Group 333) 「국제군사기구문서(Records of International Military Agencies)」에 속해 있다. 〈휴전회담회의록〉은 작성 당시 2급비밀(secret), 3급비밀(confidential), 대외비(restricted) 등의 비밀등급이 부여되었으며, 비밀정보(security information)로 취급되었다. 1953년 7월 27일 비밀해제되어 10월 27일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1962년 내셔널 아카이브에 의해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 T1152, 11rolls).

이 〈휴전회담회의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휴전회담 기록 가운데 유엔군-미군측이 작성·유지했던 가장 정확한 공식문서이다. 휴전회담의 다른 상대방이었던 공산측의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휴전회담회의록〉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쟁점, 휴전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휴전회담의 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휴전을 향한 최초의 움직임은 이미 전쟁 발발 직후부터 있어왔으나, 본격화된 것은 미국과 유엔군,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면서부터였다. 영국을 비롯한 참전국들 사이에서 戰前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위한 휴전의 목소리가 커졌다. 1951년 3월경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었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UN군과 공산군측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을 동반한 채, 2년 7개월 동안 5백 75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주 : 이하는 이동현·이완범, 1994 〈휴전회담회의록 해제〉 《남북한관계사료집》 제1집의 내용을 주로 인용했다)

휴전회담은 쌍방간에 5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담과 전문적인 세부사항을 토의하는 합동분과위원회, 문안 등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참모장교회의, 일반행정사무를 취급하는 연락장교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각종 회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본회의 기록은 개별회담 마다 '大事記'(Record of Event)'와 '전체회의록사본'(Transcript of Proceedings), 그리고 첨부문서(Enclosure)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기록은 '회의록요약'(Summary of Proceedings : 제2의제) 혹은 '전체회의록사본'(Transcript of Proceedings : 제3-4의제), 그리고 노트(Notes)-첨부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모장교회의 기록은 회의록 혹은 전체회의록사본, 첨부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장교회의 기록은 회의

록, 보고서, 첨부문서, 메시지, 부록과 비망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단회의 기록은 전체회의록사본과 첨부문서로, 통제장교회의 기록은 주로 비망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회담회의록〉은 이러한 각종 회담기록을 본회담-의제별 합동분과위원회-의제별 참모장교회의-연락장교회의의 순서로 철해놓은 것이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개막된 휴전회담은 7월 25일까지 의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유엔군측은 협상 의제의 채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전쟁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수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치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의 외국군철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1951년 7월 26일 개최된 제10차 본회의에서 휴전회담의 공식의제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제1의제 : 회의 의제의 채택
- 제2의제 :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쌍방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설정 (군사분계선 설정)
- 제3의제 :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 제4의제 : 포로에 관한 협의
- 제5의제 :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이러한 의제 확정에 기초해서 휴전회담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1의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제2의제 즉 군사분계선 설정과 비무장지대 설치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했다. 공산군은 전쟁 이전의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유엔군측은 실제 쌍방 전투부대의 접촉선을 주장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회담이 난관에 봉착하자 유엔군은 8월 15일 제25차 휴전회담에서 쌍방이 각각 대표1명과 보좌관 2명씩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공산군측은 대표1명을 2명으로 수정·제안했고, 유엔군이 이에 동의했다. 또한 합동분과위원회의 개최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본회담, 합동분과위원회, 연락장교회의 등의 3단계 회의로 구분되어 진행되기에 이른다. 개성회담은 7월 10일 1차 본회의부터 8월 16일 26차 본회의까지 진행되었고, 분과위원회는 1951년 8월 17일 제1차 분과위원회부터 8월 22일 제6차 분과위원회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8월 23일 이후 2개월 동안 회담이 중단되었고, 개성회담은 이로써 끝나게 된다.

회담 중단 기간 동안 총공세를 펼친 유엔군은 1951년 9월 27일 회담장소를 옮길 것을 제안했고, 1951년 10월 22일 공산군은 판문점에서 회담재개를 제안했다. 전세가 불리했던 공산군은 10월 23일 군사분계선을 실제 쌍방 전투부대의 접촉선으로 하자는 유엔군 제안에 동의해 즉시 휴전을 요구했다. 유엔군이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1951년 11월 27일 군사분계선 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군사분계선 설정협정의 핵심은 (1)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2)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3) 상기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동년 12월 27일까지의 임시휴전기간 중 휴전협정은 체결되지 못했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휴전회담 쌍방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제2의제에 합의한 다음날인 1951년 11월 28일부터 제3의제인 휴전감시방법과 그 기구 설치문제에 관한 협상에 돌입했다. 동시에 시간절약을 위해 제4의제인 포로문제와 제5의제인 관련국에 대한 건의문제를 동시에 토의했다.

제3의제인 휴전감시방법·감시기구 설치문제의 주요 핵심 사항은 (1) 휴전후 군사력 증강 규제 및 (2)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구성이었다. (1)은 주로 휴전후 한반도 외부로부터 병력 및 무기의 반출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1952년 2월 23일 쌍방은 휴전 후에도 계속 한반도 내에 주둔하게 될 외국군의 병력고체를 고려하여 월 3만 5천명 병력의 출입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52년 3월 20일에는 병력 및 전투장비 출입국 규제에 관한 협정내용의 준수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쌍방은 남북한 각 5곳의 감시대상 항구를 지정했다. 공산군측은 신의주-신안주-만포진-함흥-청진으로 지정하고, 유엔군측은 부산-인천-강릉-군산-대구로 정했다. (2)와 관련하여 유엔군측은 중립국 수를 쌍방이 각 2개국씩 지명하는 4개국안을 제안했다. 반면 공산군측은 쌍방이 각3개국씩 지명하는 6개국안을 제안하면서 소련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결국 1952년 5월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제안을 수락하여 5월 7일 공산군측이 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유엔군측이 지명한 스웨덴·스위스 4개 중립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동시에 진행된 제4·5의제 가운데 제5의제는 쉽게 타결되었다. 1952년 2월 17일 쌍방은 이 문제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하여금 관계 각국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제문제 협의를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전후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4의제, 즉 포로문제는 양측의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가장 많은 격론이 벌어졌다. 유엔군측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북한-중공-대만을 선택케 하는 '자유송환원칙'을 주장했다. 반면 공산군측은 모든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각기 고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강제송환원칙'을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은 포로수용소 폭동과 연계되면서 휴전회담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이후 재개된 4월 11일 연락장교회의에서 병상포로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고, 6월 4일 본국 송환거부포로의 처리문제가 합의되었다. 6월 8일에는 포로송환협정이 조인됨으로써 포로교환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휴전협정은 조인식을 목전에 두었지만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측에 억류중이던 반공포로 2만 7천여명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석방시켰다. 이 반공포로석방은 휴전협정 체결을 조금 지연시켰으나 동년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7월 23일에는 비송환포로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에 이른다. 협정의 정식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타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서명자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평뎬화이(彭德懷),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중장, 조선인민군 수석대표 남일대장 등이었다. 협정은 영문-한글-중국어로 된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로 구성되었으며, 휴전협정서는 前文, 본문 5조 63항,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휴전회담회의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南北韓關係史料集》 제1-10집으로 간행되었으며, 의제별 연대기 순서로 편집되었다.

- 제1권 : 제1-26차 개성 본회의 기록(1951. 7. 10~1951. 8. 16)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s)
- 제2권 : 제27-158차 판문점 본회의 기록(1951. 10. 25~1953. 7. 19)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s)
- 제3권 : 제2의제에 관한 제 1-37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8. 17~ 1951. 11. 27)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3,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 제4권 : 제3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12. 4~1952. 4. 19)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4,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3)
- 제5권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12. 11~1952. 3. 15)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5,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4)

- 제6권 : 제2의제(1951. 11. 30~1951. 12. 10)와 제3의제(1951. 12. 20~1952. 4. 27)에 관한 참모장교회담 기록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6, Staff Officers' Meetings)
- 제7권 : 제4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담 기록(1952. 1. 23~1952. 5. 10)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7, Staff Officers' Meetings)
- 제8권 : 휴전협정문 작성을 위한 참모장교회담 기록(1952. 7. 26~1953. 7. 22)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8, Staff Officers' Meetings)
- 제9권 : 연락장교회의 기록 I(1951. 7. 8~1952. 9. 29)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9, Liaison Officers' Meetings)
- 제10권 : 연락장교회의 기록 II(1952.10.1~1953. 7. 29)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0, Liaison Officers' Meetings )
- 제10권 부록 : 연락단(Liaison Group)회의(1953. 4. 6~5. 2)와 통제장교(Control Officers)회의(1953. 4. 19~5. 2)

참고로 휴전회담의 쌍방 대표명단을 첨부한다.

○ 유엔군측

- 수석대표 : 미 해군중장 C. 터너 조이(C. Turner Joy), 미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2세(William K. Harrison, Jr. : 1952. 5. 22 이후)
- 미군대표 : 해군소장 올리 A. 버크(Arleigh A. Burke), 공군소장 로렌스 C. 크레이지(Laurence C. Craigie), 해군소장 존 C. 다니엘(John C. Daniel), 육군소장 클로드 B. 페렌보(Claude B. Ferenbaugh), 육군소장 헨리 I. 하디스(Henry I. Hodes), 해군소장 루트벤 E. 리비(Rutheven E. Libby), 육군준장 프랭크 C. 맥코넬(Frank C. McConnel : 1952년 5월 22일 추가), 육군준장 조셉 T. 모리스(Joseph T. Morris), 공군소장 하워드 M. 터너(Howard M. Turner), 육군준장 랄프 M. 오스본(Ralph M. Osborne), 공군준장 에드가 E. 글렌(Edgar E. Glenn), 공군소장 조지 F. 핀치(George F. Finch)
- 한국군수석대표 : 백선엽소장, 이형근소장, 유재홍소장, 이한림준장(1952년 5월 22일 유재홍과 교체), 최덕신소장
- 한국군대표 : 이호준장, 김일병준방, 김창규준장
- 참모장교 : 미군 대령 케이언스(Cairns), 프리더스도포(Friedersdorff), 웨버(Weber), 카락(Carlock), 쾨(Kern)
- 연락장교 : 미공군대령 앤드류 J. 키니(Andrew J. Kinney), 미해병대령 제임스 C. 머레이(James C. Murray), 미공군대령 돈 O. 대로우(Don O. Darrow), 한국육군 이수영중령
- 통역장교 : 미해군중위 호레이스 C. 언더우드(Horace C. Underwood), 미육군중위 리처드 F.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 미육군중위 케네스 우(Kenneth Wu)

○ 공산군측

- 수석대표 : 남일대장
- 북한군대표 : 이상조소장, 장평산소장, 정두환소장, 김원무소장, 소희소장
- 중공군대표 : 멩화(鄧華)상장, 비엔창우(邊昌武)중장, 쉐팡(謝方)소장, 췌청윈(柴成文)소장, 티엔자오유(田教友)소장
- 참모장교 : 북한군 주연대좌, 북한군 이평일대좌, 북한군 나평일대좌, 북한군 오현성대좌, 중공군 왕티엔(王天)대교

- 연락장교 : 북한군 장춘산대좌, 북한군 김일파중좌, 중공군 황티엔띠(黃天地)대교
- 통역장교 : 북한군 설정식소좌, 북한군 도유호소좌, 주공군 삐즈랑(畢致浪)소교

## 2.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 문서(501.BB Korea Series)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史資料集》 38—42집(1998) 및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3—44집(1999) 등 총7권으로 간행되었던 UN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미국무부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출처는 美國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문서군(Record Group) 59이다. 문서철의 원래 제목은 〈미국무부 1945-49년 십진분류문서철 501.BB Korea〉(Decimal Files 1945-49 501.BB Korea)이며, 소장된 자료상자(box) 번호는 2100,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등이며, 총매수는 4,200매 가량이다.

이 문서철의 제목인 501.BB Korea는 미 국무부의 독자적 문서분류체제에 따른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미 국무부의 문서분류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무부는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문서분류체제를 변경해 왔다. 이는 (1) 중앙문서철(Central Files : 1798—1906), (2) 숫자분류문서철(The Numerical File, 1906—1910), (3) 십진분류문서철 (The Decimal File, 1910-1963)로 구분된다. 현대사 자료와 관련있는 십진분류문서철은 숫자분류문서철의 한계에 불만을 느껴 고안된 것이다. 이는 십진 분류체제에 따라 주제별로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다. 새로운 분류체제에 따라 기록에는 9개의 주요 주제등급 중 하나의 주제등급이 매겨졌고, 나라별로 분류되었다. 9개의 주요 주제등급은 0부터 8까지 숫자가 붙여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910—1949년간 미국무부 십진분류문서철의 주제등급〉

### 0. General and Miscellaneous

(일반 및 기타)

#### 1. Administration of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의 행정 )

#### 2. Extradition Treaties and Cases

(인도(引渡)조약 및 사례)

#### 3. Protection of Private and National Interests

(개인 및 국가이익의 보호)

#### 4. International Claims Treaties and Cases

(국제배상조약 및 사례 )

#### 5. Multilateral Treaties :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Organizations

(다자간조약 : 국제회의 및 기구)

#### 6. Commerce,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통상, 관세 및 무역협약)

#### 7. Political and Treaty Relations of States

(각국의 정치 및 조약관계)

## 8. Internal Affairs of States

(각국 내정)

십진분류체제는 기본적으로 100단위로 표시되는데 백단위는 위의 주제등급을, 십단위와 일단위를 합친 두자리 숫자로 각 나라와 지역을 표시한다(예를 들어 한국 95, 중국 93, 일본 94, 프랑스 51 독일 41). 또한 소수점 아래로는 특정한 주제등급에 따라 특정한 숫자가 배열된다. 이 체제는 배열된 숫자로 국가와 지역, 주제와 이슈,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잡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외교문서(Foreign Relation of United States : FRUS)》 한국관련 부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740.00119 Control(Korea)란 십진분류는 7(국가간의 정치관계), 40(유럽), 00(세계일반), 11(전쟁), 9(중전), Control(Korea)(한국통치)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국통치 관련 문서를 의미한다. 또한 895시리즈는 8(각국내정)과 95(한국)를 합친 한국내정(Internal Affairs of Korea)을 의미한다.

1910년 국무부가 십진분류문서체제를 채택했을 때 문서에 붙여진 숫자들은 1910년대의 세계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개량되었다. 특히 1950년에 개정된 십진분류는 그 이전 시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 참조를 위해 덧붙인다. 십진분류체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963년이었다(주 : 십진분류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마이크로필름을 참고할 수 있다. Manual for Classification of Correspondence. SD 4th ed., 1938. M600. 1 roll. 1938년 십진분류체제 개정됨 1910-1949년까지 사용된 십진분류 체제에 대한 안내 제공: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cords Codification Manual, Central Decimal File, 1950-1963. M1275. 1 roll 1950년 개정됨.1963년까지 안내)

<1950—1963년간 미국무부 십진분류문서체의 주제등급>

### 0. Miscellaneous.

(기타)

#### 1.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 정부의 행정)

#### 2. Protection of Interests (Persons and Property).

(이해관계의 보호[개인 및 재산])

#### 3.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gresses, Meetings and Organizations. United Nations. Multilateral Treaties.

(국제회의, 의회, 회합 및 조직. 국제연합, 다자간 조약)

#### 4.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Trade Relations, Customs Administrations.

(국제무역 및 상업. 무역관계, 관세행정)

#### 5. International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Relations. Cultural Affairs. Psychological Warfare

(국제 정보 및 교육관계. 문화문제. 심리전)

#### 6.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Other International Relations. Bilateral Treaties.

(국제 정치관계. 기타 국제관계. 쌍무협정)

#### 7. Internal Political and National Defense Affairs

(국내 정치 및 국방문제)

#### 8. Internal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Affairs

(국내 경제, 산업 및 사회문제)

## 9. Other Internal Affairs.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Science.

(기타 국내문제. 통신. 수송. 과학)

501.BB Korea라는 문서철 역시 십진분류문서철의 분류방식에 의한 것이다. 501.BB Korea의 경우, 501은 연합국을, BB는 총회를, BB-Korea는 한국임시위원단(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을 의미한다. 즉 501.BB Korea는 미국무부가 취급한 UN한국임시위원단 관련문서, 혹은 UN의 한국문제 처리관련 문서를 의미한다.

문서의 분류번호는 각문서 첫페이지의 오른쪽 끝 중단에 스탬프 혹은 필사로 적혀있다. 형식은 '501.BB Korea/월-일년도'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501.BB Korea/1-1248은 1948년 1월 12일에 철폐놓은 UN한국(임시)위원단 문서라는 뜻이다. 여기서 1948년 1월 12일은 문서가 작성된 날짜가 아니라 미국무부가 수신한 날짜 혹은 담당부서가 문서를 철폐한 날짜이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일과 분류번호의 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서의 생산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948년의 UN韓國臨時委員會(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 UNTCOK)과 1949년의 UN韓國委員會(United Nations Committee on Korea: UNCOK)이다. 또한 미국무부, 남한의 국무부정치고문, 미군정당국 등도 주요한 문서 생산주체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47년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2월 남한에 파견된 UN한국임시위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을 수합해 UN총회에 보고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측의 입북거부로 남한만의 여론을 수합해 UN소총회에 보고했으며, 그후 5·10총선거 감시 및 결과보고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임무종결에 따라 1949년 UN은 재차 UN한국위원단을 조직해 한국의 통일문제 해결에 주력케 했다. 통칭 UN新韓委로 불리는 이 조직은 1949-50년 시기 남한에 체류하면서 평화통일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1950년 1월 미대사관이 "혼수상태의 위원단(the comatose Commission)"으로 부를 정도로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주 : 357.AD file, UNCOK, box 1375, State Department to San Salvador Embassy, January 24, 1950). 그러나 1949년과 1950년 5-6월에 반복된 UN新韓委의 대북 평화통일 제안에 이에 대한 북한의 거부와 화답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해 주목할 측면이 있는 것이었다. 또한 1950년 중반 UN新韓委 예하에 신설되었던 소규모의 군사감시반은 한국전쟁의 도발주체가 북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UN안보리와 UN총회의 반침략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주 : 현재 UN한국임시위원단과 UN한국위원단이 UN총회에 제출한 1948, 1949, 1950년도 보고서는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에 의해 번역되어 있다. 이 번역본들은 중요한 첨부문서들과 관련기록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단 자체의 보고서로서는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5 《1948年度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會 報告書(第1部 第1卷) : 立法參考資料 第30號》 國會圖書館;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5 《國際聯合韓國委員會 報告書(1949·1950) : 立法參考資料 第35號》 國會圖書館; 한편 한국문제와 관련된 초기 UN의 결의문 및 관련문건들은 鄭一亨 編著, 1961 《유엔과 韓國問題》 新明文化社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한 UN한국(임시)위원단 관련문서가 포괄하는 시기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이며, 주로 1948년과 1949년에 집중되어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만들어지는 1947년 하반기 이후부터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이 문서철은 유엔에서 거론된 한국문제에 관해 미국무부가 정리한 것이므로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심이 시작된 1946년 시기부터 문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501.BB Korea문서는 미국무부가 간행하는 《미국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 of United States : 약칭 FRUS)》 중 한국관련 부분의 중요한 母本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1945~1950년 시기 한국관련 FRUS의 주요 출처는 주로 국무부 문서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부 십진분류문서철의 세가지 문서철이다. 이는 ① 740.00119 Control Korea시리즈, ② 895시리즈, ③ 501.BB Korea시리즈 등이다. 이중 501.BB Korea는 국내에

알려진 바 없으며,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내에 복사·반입된 적이 없다[주 : 740.00119 control Korea시리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駐韓美軍政治顧問文書〉라는 제목으로 《大韓民國史資料集》 제18—27집 등 총 10책을 간행했으며(國史編纂委員會, 1994~1995), 895시리즈는 영인업체가 《美國務省韓國關係文書》라는 제목으로 총23책을 영인·출간했다(아름出版社, 1995)]

대한민국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UN한국임시위원단과 UN한국위원단은 그 중요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또한 자료발굴과 공개란 측면에서도 이들 위원단에 대한 자료는 희소성을 지닌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大韓民國史資料集》 제1집~제7집은 바로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과 관련된 문서들을 담은 것이다[주 : 國史編纂委員會, 1987~1990 《大韓民國史資料集:UN韓國臨時委員團關係文書》 제1집~제7집]. 그런데 이는 UN한국임시위원단에 파견된 주한미군(USAFIK) 연락장교의 보고서를 간행한 것이며, 주로 남한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결정서와 보고서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들이다. 즉 이 문서들은 UN한국임시위원단관련 문서들이지만, 작성의 주체가 UN한국임시위원단이 아니라 주한미군 연락장교의 손을 거친 간접적인 문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501.BB Korea시리즈는 한국문제의 유엔이관부터 UN한국임시위원단의 조직·활동·5·10선거 감시 및 보고서작성·해체, UN신한위의 구성·활동, 이와 관련된 미국무부의 대응과 조치, 현지 주한미대사관의 대응과 조치, 남북한 당국의 반응 등이 발생한 사건과 경과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조직과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입장과 방침이 선명히 드러나는 이 문서들은 대한민국정부 수립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형성되었던, 한국과 UN을 정점으로 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N한국(임시)위원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어, 한국과 UN의 초기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UN한국위원단은 1951년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 UNCURK)이 설치됨으로 해체되었지만, 그 역사적 역할은 한국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 3. 미군정기군정단·군정중대문서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자료집성》 제47~제51집(2000—2001)으로 간행된 1945~48년 시기 남한의 지방을 직접 점령하고 통치했던 주한미군정 지방 군정부대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주된 지방 군정부대는 軍政團(사령부 및 사령부과건대 군정단 : Headquarters & Headquarters Detachment, Military Government Group)과 軍政中隊(군정본부 및 본부중대 : Military Government 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Company)이다.

앞서 먼저 군정단·군정중대가 어떤 조직이며, 남한을 점령·통치한 미 제24군단의 대한 군정정책과 그 실시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кина와에 주둔하던 미 제24군단은 1945년 8월 8일 이후 한반도 점령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28일 하지장군은 주한미군의 구성부서로 군정(military government)을 정식 수립했다. 군정 부사령관에 해리스준장이 임명되었고, 10군 고사포대 본부 및 본부중대가 10군에서 주한미군 군정으로 배치되었다.

1945년 7월 22일 전쟁부는 해당 지역 軍政團(사령부 및 사령부과건대 군정단 : Headquarters & Headquarters Detachment, Military Government Group)과 軍政中隊(군정본부 및 본부중대 : Military Government 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Company)의 편제 및 장비를 발표했다. 이 군정단과 군정중대는 주한미군정 사령부 예하에서 남한의 道—市·郡 차원의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다.

[표1] 미 전쟁부의 군정단·군정중대 편제·장비 인가 내역(1945. 7. 22)

	지휘관	장 교		사 병	장 비
군 정 단	대 령 (선임군정장교)	13명	중령6명(공업, 법률, 종교, 공안, 자원·산업, 군수) 소령4명(통역관, 노동, 구호, 수송)	26명(주로 행정병, 번역병 2명)	트럭7대, 타자기6대
군정중대	중 령	12명	소령3명(공업·건설, 의학·보건, 공안) 대위8명(민간급양, 토목·설비, 노동법률, 공안, 구호, 위생, 군수)	60명(그중 26명 행정·내무)	트럭10대, 7명당 야전레이저1대, 휴대용 타자기4대

선임 군정장교가 지휘하는 군정단은 道(province)와 같은 정부의 상층부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중령이 지휘하는 군정중대의 기능은 邑(township)과 같은 정부의 하부단위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한 점령과 군정실시에 필요한 군정단·군정중대 등 군정요원의 정확한 소요는 판단하기 힘들었다.

군정요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24군단은 필리핀 루손(Luzon)섬에 있던 기존의 3개 군정중대를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요새의 민정요원보충대(Civil Affairs Staging Area : CASA)에 2개 군정단과 8개 군정중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정중대·군정단의 도착일자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24군단은 8월 22일 3개의 임시군정팀(provisional military government team)을 조직했다. 제1팀은 7사단과 동행하도록 예정되었고, 제2팀은 제24군무지원사령부(ASCOM 24)와 함께 인천으로, 제3팀은 서울시의 시정을 담당하도록 예정되었다. 3개의 임시군정팀은 한국 상륙 당시 장교 36명과 사병 9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 상륙 직후 임무를 개시했다. 상륙 직후 주한미군이 보유한 군정요원의 총수는 300여명 가량에 불과했다.

진주 직후부터 24군단은 군정의 향후 역량 및 배치에 관해 조사했다. 24군단의 구두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관방

기획과(Secretariat Planning)는 10월 3일 군정의 향후 역량 및 배치에 관한 군정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남한 132개 各郡에 장교 1명과 사병 3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을 배치, 14개 市에는 장교 12명과 사병 60명으로 구성된 군정중대를 배치, 8개 道에 장교 27명과 사병 90명으로 구성된 强化中隊(reinforced company)를 배치, 조선식량영단과 동양척식회사에는 각각 장교 35명과 사병 90명, 장교 12명과 사병 26명을 배치, 총독관방과 기타 정부독점기업에는 장교 600명과 사병 1,000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장교 1,173명과 사병 3,446명 등 총 4,619명이 요구되었다. 이는 군정에 필요한 특별부대(헌병, 자동차정비, 수송, 의료, 범죄수사)와 정보·첩보부대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예상안이었다.

[표2] <상륙직후 주한미군의 군정요원수>

		배치(Assigned)	배속(Attached)	합계	실제 남한군무 인원수
군정병력 (1945. 9. 6)	장 교	60	39	99	87
	준 위	1	0	1	1
	사 병	173	0	173	159
	합 계	234	39	273	247
군정병력 (1945. 9.23)	장 교	79	48	127	87
	준 위	2	0	2	2
	사 병	178	30	208	188
	합 계	259	78	337	317

출전 : 9월 6일자는 Morning Report, Hdqrs and Hdqrs Btry, Tenth Army AAA, 10 Sept. 1945;  
9월 23일자는 Tenth Army AAA, Morning Report, 23 Sept. 1945

이런 막대한 전문요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부대 배치의 우선 순위에서 남한은 일본에 뒤진 상태였다. 군정요원의 훈련과 배치에 있어서 일본은 제1순위였다. 그러나 9월 하순 일본에 대한 군정 불실시가 명확해지자, 쓸모가 없어진 수많은 군정중대는 남한으로 재배치되었다. 1945년 8월말 몬트레이 민정요원보충대에서 편성되었고, 9월 21일 일본을 향해 출항했던 28개 군정중대(제46~제73군정중대)와 5개 군정단(제98군정단~제102군정단) 등이 남한으로 급거 동원되었다. 여기에 필리핀에서 남한을 목표로 했던 2개 군정단과 8개 군정중대 등을 합쳐 총 3200명의 병력이 10월 20일을 전후해 남한에 상륙했다. 태평양전구에서 미군이 가용할 수 있는 군정부대 중 일본에서 필요치 않은 부대들이 남한에 쏟아부어졌다.

이들의 도착에 따라 군정요원의 규모는 10월 중순의 1천여 명에서 12월말에는 약 4천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중 주한미군정 사령부의 병력이 2천여 명에 달했고, 道군정과 郡군정을 담당한 군정단·군정중대 병력도 2200여 명에 달했다.

[표3] <지방군정청 병력 현황(1945. 11. 31)>

구 분	장 교	사 병	합 계
정 원	638	2,882	3,520
현 원	541	1,918	2,459
부 족	97	964	1,061

출전 : C.L. 호그 지음/ 신복룡·김원덕 옮김, 1992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p.387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 사령부가 정식 편성될 때 현재원은 장교 671명, 사병 1316명으로 총 1,987명이었고, 1945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의 7개 군정단과 40개 군정중대의 총 병력수는 장교 469명, 사병 1,756명으로 총 2,225명이었다. 그 후로도 군정요원의 확충은 계속되어 46년 1월 15일 민정요원보충대(CASA) 폐쇄 직전 군정학교의 마지막 과정을 이수한 장교 90여 명이 남한에 파견되었다. 1946년 1~2월에는 동원해제되어 귀국하는 40사단 병력 중 약

1천여 명이 군정요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군정요원은 1946년 4월 30일 현재 주한미군정 사령부에 2,139명, 7개 군정단과 40개 군정중대에 2,669명으로 합계 4,808명에 달했다. 1946년 5월 31일자 군정병력은 4,886명을 기록했다.

주한미24군단의 남한점령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주 직후에 장교들로 구성된 정찰팀(reconnaissance team)이 중요 도시 등에 체류하면서 미군진주를 알리고 상황을 정찰하는 수준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보다 대규모의 전술부대들(tactical units)이 市·郡단위로 점령을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군정통치를 위해 훈련과 장비를 갖춘 군정중대(Military Government Companies)들이 군단위에 진출한 시기였다.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군정중대들은 늦어도 1945년말경에 각도에 배치되었고,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 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미군정의 공식 지배가 개시되었다.

[표4] <진주초기 주한미군 전술부대의 관할지역>

사단명	연대명	관할지역(도)	연대주둔지	비 고
7사단	17연대	경기도(서울-원주이남), 충청북도	청주, 수원	
	32연대	강원도(삼척-원주)	원주	
	184연대	경기도(북부)		
40사단	160연대	경상남도	부산	6사단으로 교체
	185연대	경상북도(북서)	대구	
	108연대	경상북도	경주	
	포병대	경상남도(서부)	진해	
6사단	20연대	전라남도	광주	
	63연대	전라북도	군산	
	1연대	경상북도(북서)	대구	충청남도(계획상)

첫 번째 단계인 정찰팀의 방문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되었다.

곧이어 두 번째 단계인 미 전술군의 지방진주와 점령은 9월부터 10월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점령을 담당하는 것은 미 제7보병사단, 제40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제24군무지원사령부였다. 미군의 남한점령계획인 베이커-포티계획에 따라 9월 8일 제7보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했다. 제17, 32, 184보병연대로 구성된 7사단은 인천과 서울일대를 점령했으며, 이들의 관할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이었다. 제40보병사단은 점령계획인 베이커-포티-원(Baker-Forty-One)계획에 따라 9월 12~23일 인천에 상륙했다. 제108·160·185보병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40사단은 장교 777명과 사병 12,623명으로 구성된 막강사단이었다. 40사단은 10월 2일까지 부산으로 이동했고, 10월말까지 경상남북도에 배치되었다. 24군무지원사령부는 10월 24일 제주도에 진주했다. 애초에 한국행이 예정되었던 96사단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대신 제6보병사단이 한국에 배치되었다. 제1·20·63보병연대 등 총 13,584명으로 구성된 제6사단은 10월 16일 인천에 도착했고, 10월말까지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에 이동 배치되었다. 이후 1945년 11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제40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40사단의 관할지역은 대부분 제6사단이 대체하게 되었고, 일부 관할지역과 제6사단 관할지역은 제7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전술부대의 지방점령은 이후 투입된 군정중대와 군정단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체되었다. 군정부대(군정중대·군정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술부대가 해당 지역에 대한 군정의 책임자 역할을 해야 했다.

군정중대가 郡단위로 진출하고 전술부대와 교체하는 마지막 단계는 1945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 파견된 군정중대와 군정단은 대부분 켈리포니아주 몬트레이요새에서 1945년 8-9월경에 조직된 부대였으며, 장교의 대부분은 버지니아주 샬럿스빌(Charlottesville) 군정학교(the School of Military Government)를

비롯한 군정학교 등에서 정규 군정·민정업무를 숙달한 전문가들이었다.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주한 군정단과 군정중대는 출항지를 기준으로 할 때 ① 이전 필리핀민정부대(PCAU's) 소속이던 6개 군정중대(10월 20일, 11월 1일 인천도착) ②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요새의 민정요원보충대(CASA)에서 편성된 군정중대 중 일본 배치예정이었으나 일본에 군정이 실시되지 않아 한국에 돌려진 5개 군정단과 28개 군정중대(10월 21일 인천 도착) ③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요새의 민정요원보충대(CASA)에서 한국에 배치된 2개 군정단과 8개 군정중대(11월 2일 인천도착), ④ 24군단이 임시로 편성한 임시군정팀(Provisional Government Team) 3개(10월 6일 인천도착) 등이었다.

이들은 1945년 12월 말까지 남한 전역에 진주를 완료했다. 남한에는 3가지 종류의 군정부대가 진주했는데, ① 3개의 임시군정팀(Provisional Military Government Team), ② 군정단(Military Government Group), ③ 군정중대(Military Government Company) 등이었다. 먼저 임시군정팀은 오키나와에서 조직되었고,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직이었다. 이들은 전쟁부의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1945년 12월 21일 서울에서 편성된 115, 116, 117군정중대로 대치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道軍政을 운영했으며, 예하에 수개의 군정중대를 감독했다. 군정중대는 市·郡단위 지방에 파견되었으며, 일부는 군정단과 함께 도청소재지에서 도군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에 군정중대파견대(detachment)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했다.

진주 초기에는 군정단과 군정중대의 상호관계 및 군정부대와 전술점령부대 간의 관계가 불명확했다. 왜냐하면 모든 군정부대들은 제6, 제7, 제40보병사단 혹은 24군무지원사령부 중 하나에 배치되었으며 평시 지휘계통이 이들 사단을 통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9일자로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역사령관 및 각도 군정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군정부대는 현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각 사단에 배속된다, 군정부대가 정부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면 전술부대가 보유한 현지 군정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경감된다고 되어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 사령부(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Hq USAMGIK)가 설립되고, 1월 14일자로 군정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전술지휘관으로부터 주한미군정 사령관으로 이관되면서 해소되었다. 이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道군정(군정단)-市·郡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주둔한 전술부대는 군정부대에 대한 지원과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다.

1945년 9~10월 미군정 지방조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 서울 (1945. 10. 20)			② 경상남도 : 부산 (1945. 10. 18)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마이어즈(William B. Meyers)소령		1945. 10. 2	해리스(Charles S. Harris)준장		1945. 9. 28
루트윅(Maurice Lutwack)중령		1945. 11. 23	질레트(Francis E. Gillette)대령		1946. 1. 25
앤더슨(Charles Anderson)중령		1946. 4. 25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26군정중대	부 산	1945. 10. 24
1임시군정팀	남한 全道	1945. 9. 11	98군정중대	부 산	1945. 10. 30
2임시군정팀	인 천	1945. 9. 11	50,57,58,62,70군정중대	부 산	1945. 11. 1
3임시군정팀	서 울	1945. 9. 11			
47군정중대	서 울	1945. 10. 24	③ 경상북도 : 대구 (1945. 10. 25)		
54군정중대	개 성	1945. 10. 28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60군정중대	수 원	1945. 10. 28	헨(Edwin A. Henn)대령		1945. 11. 3
68군정중대	의정부(11.6이후 서울)	1945. 10. 28	자노우스키(A. Janowski)중령		1945. 11. 26
97군정단	서 울	1945. 11. 2	네일(Samuel S. Neil)중령		1946. 3. 1
39군정중대	인 천	1945. 11. 15	비숍(Harry D. Bishop)중령		1945. 5. 29
40군정중대	서 울	1945. 11. 19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 제1~3임시군정팀은 1945년 12월 21일부로 새로 편성된 제115, 116, 117군정중대와 교체되었다. * 1945년 11월 20일부로 4개의 군정중대, 즉 42, 43, 72, 73군정중대가 새로 서울에 배치되었다.			63군정중대	안 동	1945. 10. 26
			34군정중대	대 구	1945. 10. 29
			51,71군정중대	대 구	1945. 10. 29
			99군정단	대 구	1945. 10. 29

④ 강원도 : 춘천 (1945. 10. 26)			⑦ 전라북도 : 전주 (1945. 10. 18)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멀리넥스(M. L. Mullinex)중령		1945. 10. 9	갤러기(Ralph F. Galloghy)중령		1945. 11. 20
츠워만(Carl H. Zwermann)중령		1945. 11. 26	쇼(Lyman A. Shaw)중령		1946. 5. 15
레이디(Richard F. Reidy)중령		1946. 5. 29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28군정중대	전 주	1945. 10. 21
46군정중대	춘 천	1945. 10. 28	56군정중대	군 산	1945. 10. 23
52군정중대	원 주	1945. 10. 28	64군정중대	남 원	1945. 10. 24
100군정단	춘 천	1945. 10. 28	48군정중대	전 주	1945. 10. 25
66군정중대	삼 척	1945. 10. 28	44군정중대	정 읍	1945. 11. 14
38군정중대	강 룡	1945. 11. 18	96군정단	전 주	1945. 11. 17
⑤ 충청북도 : 청주 (1945. 10. 18)			⑧ 전라남도 : 광주 (1945. 10. 26)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세너트(Ray C. Senate)중령		1945. 11. 8	린트너(Julius H. Lintner)중령		1945. 10. 23
머피(Roland E. Murphy)중령		1946. 4. 2	브록키(John M. Brocki)중령		1946. 11. 16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프라이스(Terrill E. Price)대령		1946. 3. 14
49군정중대	영 동	1945. 10. 28	피크(Raymond G. Peek)대령		1946. 6. 1
67군정중대	충 주	1945. 10. 28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35군정중대	청 주	1945. 11. 1	33군정중대	광 주	1945. 10. 22
⑥ 충청남도 : 대전 (1945. 10. 18)			69군정중대	광 주	1945. 10. 23
군정도지사		부임일자		순 천	1945. 10. 29
카프(William A. Karp)중령		1945. 10. 9	61군정중대	광 주	1945. 10. 23
군정부대명	주둔지	작전개시일		장 흥	1945. 10. 28
27군정중대	대 전	1945. 10. 21	101군정단	광 주	1945. 10. 23
102군정단	대 전	1945. 10. 28	59군정중대	제주도	1945. 11. 9
65군정중대	홍성·공주	1945. 10. 28	45군정중대	해 남	1945. 11. 22
	공 주	1945. 11. 17	53군정중대	광 주	1945. 10. 23
41군정중대	홍 성	1945. 11. 17	55군정중대	목 포	1945. 10. 27

한편 1945년 10월부터 1946년 8월까지 군정부대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임시군정팀	군정단	군정중대	합 계
1945. 10. 31	3	5	24	32
1945. 11. 22	3	7	46	56
1945. 12. 31	-	7	49	59
1946. 8. 1	-	8	32	40

남한에 배치된 군정부대의 수자는 1946년말 59개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1946년 5월 31일까지 11개의 군정중대가 해체되었는데, 군정사령부에 배치되었던 6개 군정중대(42, 43, 72, 73, 116, 117군정중대)와 경기도의 2개 군정중대(47, 115군정중대), 전남의 2개 군정중대(45, 61군정중대), 경남의 1개 군정중대(58군정중대) 등이었다. 군정중대가 해체된 가장 큰 이유는 한인에 대한 권한 이양 때문이었다. 1946년 7월에 3개의 군정중대(경남 62, 강원도 52·66군정중대)가, 8월에 3개의 군정중대(전남 55, 경남 57, 경기 68군정중대), 10월에 2개 군정중대(경북 51, 경남 56군정중대), 11월에는 1개 군정중대(충남 65군정중대)가 해체되었다. 1946년 중반 이후 군정의 한국인화(Koreanization)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군정중대의 수요가 축소된 것이었다. 그 결과 군정중대는 1946년 8월말에는 32개로, 1946년말에는 26개로 축소되었다. 이 결과 장교 240명과 사병 1200여명 등의 군정병력이 감축되었다.

지방 군정부대의 조직구조는 대체로 유사했다. 道·市·郡군정은 중앙의 군정사령부의 조직체계를 본뜬 것이었다. 도군정의 경우, 도군정지사(Provincial Military Governor) 밑에 수개의 군정부대(임시군정팀·군정중대)가 존재하며, 행정부서로 관방(Secretariat), 내무(Home Affairs), 경찰(Police), 사법(Legal), 재무(Finance), 농상(Agriculture & Commerce), 광공(Mining & Industry), 보건후생(Public Health & Welfare), 관재(Property Custodian) 등이 존재했다. 또한 고문회의(Advisor)가 자문기구로 조직되어 있었다.

주한미군정의 지휘계통은 주한미군정 사령부-군정단(도)-군정중대(시·군)-군정중대 파견대로 이어졌다. 이 《한국현대사자료집성》에는 총 7개 군정단과 37개 군정중대 등 총44개 군정부대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군진주 후 남한에 주둔했던 군정단·군정중대를 다룬 이 자료의 출처는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위치한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의 RG407 부관부 문서(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제2차 세계대전 작전보고서 문서철(World War II Operations Reports)-군정(Military Government)이며, Boxes 21875~21880, 21883, 21886, 21887 등에 수록되어 있다. 문서들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1945년부터 1947년 중반까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6년 중반 이후 군정의 한국인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군정중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고, 1947년에 들어서 그 역할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그에 반비례하여 1946년말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출범과 1947년초 남조선과도정부의 출현은 한국인들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입법·행정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정 지방군정부대 문서들이 부관부 문서철로 이동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각지방의 군정중대·군정단이 작성한 여러 종류의 보고서와 부대사는 道군정본부를 거쳐 주한미군정 사령부로 보고되었다. 주한미군정사령부는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의 보고서·부대사를 동경의 미 극동군사령부로 보냈고, 극동군사령부는 최종적으로 미 육군부 부관감실로 보냈다. 부관감실에서 군정부대사를 담당한 부서는 전쟁부기록과 역사자료반(War Department Records Branch, Historical Records Section,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War Department)이었다. 이런 경로를 거쳐 주한미군정 지방군정부대들의 보고서류와 부대사들이 RG407 부관부문서철에 남아있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주한미군정 지방군정부대의 문서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이다. 첫 번째는 보고서류이고, 둘째는 군정사·부대사류, 셋째 일반명령서철(General Orders) 등이다.

먼저 보고서류에 대해 살펴보자. 주한미군 부군정장관인 쉬츠(Sheetz)준장은 1945년 12월 4일자 <군정역사(Military Government History)>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통해 각 군정부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24군단은 군정활동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24군단 사령부 관방 기획과(Secretariat for Planning)에 역사관(a

Historian)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각군정부대(군정단·군정중대)는 24군단 사령부 관방 기획과에 주간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달 15일에는 월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은 정보는 ① 군정요원의 변동, ② 점령지역의 역사·정치·사회·경제·심리적 측면의 정보, ③ 점령후의 상황, ④ 현재의 문제점, ⑤ 해결방법, ⑥ 변화된 새로운 상황 등, ⑦ 나아가 설명, 성명, 일자, 장소가 첨부된 사진 등이었다(Memorandum by Deputy Military Governor of XXIV Corps(Sheetz), "Military Government History" 4 December 1945). 이에 따라 주한미군정 예하의 군정부대들은 주간보고서와 월간보고서들을 제출했다. 군정중대들은 자신이 진주한 각시·군의 상황을 정리해 군정단 혹은 도군정에 보고했고, 도군정본부는 다시 이를 종합해 주한미군정 사령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 각군정부대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즉시로부터 다양한 보고서들을 작성해 상급 부대에 올린 것이 분명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주둔한 제28군정중대의 경우 현지에 도착한 직후인 1945년 10월 27일부터 28군정중대의 수송과와 재정과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1월 3일부터는 〈週間軍政活動報告書(Weekly Military Occupational Activities Report)〉를 작성했다. 1945년 11월부터 모든 지방 군정중대들은 이러한 〈주간군정활동보고서〉와 각 부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간군정활동보고서〉는 해방직후 군단위의 지방에서 벌어진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간군정활동보고서〉가 담고있는 항목들은 해당 군(1개 혹은 수개)의 일반상황·정치·내무·공안·재정·관재·사회복지·관공·교육 등이며 시기와 보고주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이외에도 〈Organizational Events〉 등의 제목의 보고서류와 〈부대원명부(Roster)〉 등의 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작성주체에 따라 군정중대 파견대의 보고서, 군정중대의 군단위 보고서, 군정단·도군정의 도단위 보고서 등으로 나뉘지며, 내용별로는 각 단위 군정부대의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연간)와 부서별 보고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주간군정활동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정사·부대사류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남아있는 군정사류는 대부분 군정중대가 작성한 것으로 〈Unit History Report〉 〈Organizational History〉 〈Military Government History〉 등의 제목으로 되어있다. 군정사의 경우 1년단위의 역사가 주종을 이루지만, 어떤 경우에는 1~2개월 내지 3개월 단위의 군정사가 작성된 경우도 있다. 군정단의 역사는 군정단의 역사보다는 관할하고 있는 도의 군정사를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정역사(Military Government History)〉라는 제목의 군정사는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육군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정 부관참모는 1946년 12월 9일자 서한을 통해 미육군 규정 345-105의 개정(1946. 5. 1)에 따라 새로운 형식으로 1947년 1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AR 345-105 "Military Records-historical records and histories of organizations" 이에 따른 형식은 a. 최초의 부대구성(명칭, 편성일, 편성지, 편성인가, 병력의 출처) / b. 조직의 변화 / c. 현재원(장교 및 사병)(편성당시, 매달 순증가, 매달 순감소, 해당시기말) / d. 부대의 주둔지(영구 혹은 임시)(각주둔지 도착일, 각주둔지 출발일) / e. 행군(목적, 행군거리, 행군 양지점 및 일자, 도로 및 기후사정, 비고) 등이었다). 이 형식에 따른 보고서는 매우 간략하고 무미진조하다. 육군부의 목적이 군정부대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둔지의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도군정사와 월단위의 군정사의 경우 매우 생생한 해방초기의 남한 지방사정을 담고 있다. 포괄하는 시기는 1945년부터 1947년 말까지이다.

셋째 일반명령서철은 매우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지휘관의 변동, 부대원 표창 및 진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 종류의 지방군정부대 관련자료들은 여러 가지 자료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기술에 있어서 군정중대 보고서와 군정사의 사실성은 매우 뛰어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동군에 배치된 63군정중대의 〈주간군정활동보고서〉(1946. 3. 10)는 1946년 3월 1일 안동군 풍산면과 풍청면의 3.1절 좌우충돌사건을 편견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3월 29일자 보고는 만담가 신불출이 영주에서 강연을 하다 좌우충돌이 벌어진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데, 소규모 충돌이 집단적 진영대결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남 장흥군을 통치한 제61군정중대의 <군정역사(Military Government History)>는 화순, 보성, 별교, 고흥, 화순, 나주 등지의 초기 인민위원회 활동과 이에 대한 군정중대의 해체조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61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to Commanding General, USAFIK, "Military Government History" 23 February 1946).

둘째 군정중대의 보고서와 군정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함정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세분석의 경우에는 분명 반인민위원회 親우익의 당파적 입장이 대부분의 군정중대 보고서에 흐르고 있다. 특히 군수·면장의 임명, 지방경찰서장의 임명, 고문회의의 성원 선출 등에서 군정중대가 취한 조치들은 분명 현상유지적이었으며 우파적 경향성이 짙었다. 전남 순천에 주둔한 제69군정중대는 <1945년 군정사>에서 자신들이 순천에 도착했을 당시 "이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영향력과 연계된 유일하고 진정한 정치조직은 한민당"이라고 기록했다(6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Historical Report for 1945" undated). 남원에 주둔한 제64군정중대는 1945년 11월 17일 발생한 남원사건에 대해 합법권력인 군정중대가 한인폭도들을 정당하게 진압했다고 기록했다[이 사건은 남원에서 건국군 해산문제로 출발했다. 인민위원회와 군정중대의 마찰은 곧이어 일인 재산을 군정으로 넘기라는 군정의 명령을 인민위원회측이 거부하면서 증폭되었다. 한인들은 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군정은 지도자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도중 100여명의 한인이 항의하고 길을 가로막았다. 군정중대는 인근 주둔군을 동원해 '폭도' 중 16명을 체포했다. 11월 17일 저녁에는 7백~1천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고, 군정중대와 인근 미주둔군은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다. 2명의 한국인이 사망했고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64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Military Government History" 7 January 1946)].

셋째 지방군정부대 관련자료들은 양에 있어서 각 부대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순서로 정리하면 춘천 주둔 46군정중대(989장), 안동 주둔 63군정중대(250장), 28군정중대(162장) 등이며, 가장 적은 양은 서울 주둔 117군정중대(1장), 삼척 주둔 66군정중대(2장) 등이다. 최초로 작성된 보고서·군정사들이 통일된 형식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군정중대·군정단 관련자료들이 향후 발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넷째 이 자료는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들이다. 해방직후 각지방의 전체적 모습과 지방미군정의 활동을 보여주는 이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남한점령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정사령부가 각각 <<주한미군사(HUSAFIK)>>와 <<주한미군정사(HUSAMGIK)>>를 쓰면서 이 자료들을 이용했고, 이후 미 육군부 군사감실의 의뢰를 받고 집필한 레오나드 호그의 <<주한미군정 : 전쟁정책과 점령의 첫해 1941~1946>>(1970)은 <<주한미군사>>와 <<주한미군정사>>를 재이용했을 뿐이다. 공간된 연구 중에서 지방미군정 자료를 이용한 것은 브루스 커밍스가 유일하지만 그는 이 문서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브루스 커밍스 지음·김주환 옮김, 앞의 책 <제9장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운명> pp.135~206).

또한 지금까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주한미24군사령부·제6사단·제7사단 정보참모부(G-2)의 정기 정보보고서(G-2 Periodic Report, G-2 Weekly Summary)등이 간행되었으나, 시·군·도 차원의 상세한 군정중대·군정단 보고서는 발굴되거나 알려진 바가 없다. 군정중대의 역할과 정확한 해체시기, 권한의 이양과정 등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자료들은 해방직후 市郡 단위의 지방현대사를 복원하고, 그 조각들을 통해 해방직후 역사상과 사회상을 종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첨부1] <수록자료에 나타난 군정중대 약사>

부대명	편성지(편성일)	주둔지(市·郡)	관련부대	해체일
26군정중대	필리핀 루손(45. 9. 2)	부산	98군정단	
27군정중대	필리핀 루손(45. 9. 2)	대전	102군정단	
28군정중대	필리핀 루손(45. 7.22)	익산, 김제, 전주	96군정단	46. 4.17
33군정중대	필리핀 루손(45. 9. 2)	광주(전남)	101군정단	
34군정중대		대구	99군정단	47. 3.25
38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강릉, 정선, 삼척, 울진	66중대	
39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인천	2군정팀, 97군정단	
40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서울	3군정팀, 97군정단	
41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4)	홍성(보령,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65중대, 102군정단	47. 5.31
42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서울		
45군정중대	몬트레이(45. 9.25)	해남	101군정단	46. 5.17
46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춘천, 원주(홍천, 춘성, 횡성, 평창, 영월)	100군정단	
48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전주(무주, 금산)		
49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영동, 청주	104군정단	
50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부산	98군정단	47.11.19
51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대구		
52군정중대		영월, 평창, 원주, 횡성	100군정단	
53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광주(광산, 담양, 청송, 영양)	101군정단	46.9.30
54군정중대		개성	97군정단	
55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6)	목포(무안, 영암, 해남, 함평)	64중대, 101군정단	
56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군산(옥구)		
59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제주(46.8.1 道승격, 101군정단 분리)	65중대, 101군정단	
60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수원	47중대, 97군정단	47.11.19
61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3)	장흥(보성, 화순, 나주, 고흥, 광양)	101군정단, 61중대	46. 4. 9
62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3)	영동		
63군정중대		안동(봉화, 문경, 상주, 금천, 선산, 칠곡, 예천, 의성, 군위, 영양, 청송)	99군정단, 51·71중대	47. 3.25
64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남운	55중대	
65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공주, 홍성(연기, 청양, 대전, 서천, 부여, 논산)	59중대, 102군정단	
66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삼척(강릉, 울진)	100군정단	
67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충주(괴산, 진천, 음성, 단양, 제천)	49중대	47. 3.25
68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서울(광주, 양평, 가평, 고양, 포천, 양주)		46. 9.30
69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6)	순천	101군정단	47. 3.25
70군정중대	몬트레이(45. 9. 7)	진주(남해, 사천, 하동, 진양, 산청, 함양, 협천, 거창)	98군정단	47. 5.31
71군정중대	몬트레이(45. 8.25)	대구(영양, 영천, 영덕, 경산, 청송, 청도, 영일, 경주, 울릉도)		
72군정중대	몬트레이(45. 1.15)			

부대명	편성지(편성일)	주둔지(市·郡)	관련부대	해체일
115군정중대	서울(45.12.21)	서울		
116군정중대	서울(45.12.21)	서울(조선트럭회사)		
117군정중대	서울(45.12.21)	서울(물자통제영단)		
97군정단	몬트레이(45. 8.25)	서울(경기도)	39,40,54,60,68중대	
98군정단	몬트레이(45. 8.26)	부산	26,50,60,70중대	
99군정단	몬트레이(45. 8.25)	대구	34,51,63,71중대	
100군정단	몬트레이(45. 8.26)	춘천	46,52,66중대	
101군정단	몬트레이(45. 8.26)	광주	33,53,55,61,69	
102군정단	몬트레이(45. 9. 3)	대전	27,41,65중대	
104군정단	몬트레이(45. 9. 3)	청주	49중대	

##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이 자료는 <유엔韓國臨時委員團(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 관계문서>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大韓民國史資料集》 제1—7집(1987—1990년)으로 간행된 바 있다.

먼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연원과 활동에 대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47년 5월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 문제를 둘러싼 미소의 대립으로 결렬된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국제적 합의가 깨어진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은 독자적인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을 주장했다. 미국은 모스크바결정이라는 국제적 합의 대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처리케 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는 동시에 기계적 다수가 보장된 유엔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나 미소공위에서 미소 양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대를 유엔으로 확대한다해도 그 결과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한편 소련은 첫째 모스크바협정만이 한국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며, 둘째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관한 처리는 연합국이 담당하는 것이지 유엔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셋째 만약 모스크바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미소양군이 동시철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 없었다.

미국은 이미 1946년부터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U.N.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을 갖고있었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고, 유엔총회는 동월 23일 한국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 소련에다 중국, 영국을 덧붙인 4개국 회담에서 한국통일문제 상정을 제안했지만 소련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 결정되고, 여기서 나타난 두 개의 대립적 진영구축은 세계평화 유지라는 유엔의 임무가 동서 냉전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구성을 결정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참석을 거부했고, 남한만의 단선에 대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 시리아 대표는 반대의 입장이었다. 유엔한위는 우크라이나의 불참으로 8개국으로 운영되었으며, 1948년 1월 남한에 들어왔다. 유엔임시한위의 구성과 파견은 소련의 반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가능성의 차원에서 필연의 차원으로 실현시킨 것이었다. 이들은 남한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하는 한편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남한 내에 총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입국을 거부당한 유엔한위는 현지에서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게되자, 의장 메논과 호세텍을 유엔소총회에 파견해 향후 방향을 타진했다. 유엔한위 메논의장은 2월 20일 유엔소총회에 한국문제 해결 4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즉각적으로 유엔한위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제외해 유엔의 가결을 얻는다. 유엔은 남한에 체류중이던 유엔임시한위에 이를 통보했고, 하지는 남한 총선거일을 5월 10일로 결정했다. 여러 논란 끝에 유엔임시한위는 남한 총선거를 감시(observe)했으며, 홍콩에 체류하면서 선거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치뤄졌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제3차 유엔총회 대한민국이 유엔임시한위가 접근할 수 있던 지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총선거를 통해 수립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

이 자료의 원제목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약칭: UNTCOK) : 1947년 11월 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고 한국정부를 수립할 한국대표를 선출하는 남한선거에 대한 감시, 및 이에 대한 주한미군의 참여 (1947. 11. 14~1948. 8. 26)>(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f Korea, Short Title : UNTCOK,

Observation of Election in South Korea of Korean Representatives which shall constitute a National Assembly and establish a Government of Korea under resolution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on 14 November 1947 And Participation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therein, 14 November 1947 to 26 August 1948)이다. 일종의 보고서인 이 방대한 문서철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24군단사령부가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철은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존 R. 하지(John R. Hodge)장군 문서철의 일부이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파견되었던 미군측 연락장교인 존 웨커링(John Weckerling)준장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관련한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하지장군에게 제출했다. 배포선을 통해볼 때 이 보고서는 국무부, 육군부,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단(Central Intelligence Group), 극동군사령부(Far Eastern Command), 제24군단, 주한미군사령부(USAFIK), 주한미군정사령부(USAMGIK) 등에 14부가 배포되었다. 비밀등급은 2급비밀(secret)이며, 1985-86년 사이에 비밀해제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는 보고서로 제출될 당시 다음과 같은 4권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1권(Book No.1) 〈서술편(Narrative Account)〉, 제2권(Book No.2) 〈첨부문서 제1-89(Inclosures Nos.1-89)〉, 제3권(Book No.3) 〈첨부문서 제89-219(Inclosures Nos89-219)〉, 제4권(Book No.4) 〈사진 제1-77(Photographs 1-77)〉. 즉 서술편과 이에 첨부되는 관련문서 219건 및 사진 77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술편〉은 1948년 6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목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미군연락장교의 보고서(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로 되어 있다. 서술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도착 이전 및 환영단계(1947. 11. 14~1948. 1. 11)
2. 조직·준비단계(1948. 1. 12~4. 4)
3. (선거)감시단계(1948. 4. 5~5. 15)
4. 한국정부의 수립과 이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참여
5. 1947년 11월 14일 UN결의안 제2부 제4항의 이행

1989년에 간행된 《대한민국사자료집》 제1집에는 이 보고서의 제1권 〈서술편〉이 완역되어 원문과 함께 실려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첨부문서들 역시 《대한민국사자료집》 제2-7집으로 영인되어 있으며, 첨부문서의 번역목록은 제2집에 수록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 및 이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도착하기 전부터 주한미군사령부는 존 웨커링준장을 유엔한위 파견 연락장교로 임명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임무규정에 따르면 연락장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대리하는 한편 위원단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실시 문제에 대해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엔한위가 문의·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의 입장과 방침을 전달했다. 이런 연유로 미국측은 유엔한위 내부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각국대표단 및 사무국원에 대한 미국측의 상세한 정보파악과 평가는 주목할만 하다.

둘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도착부터 출국까지 주한미군사령부의 원조와 후원에 의해서만 활동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주거·식사·자동차·통신수단·분부건물·오락시설 등을 모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유엔한위의 조직 자체가 미국의 제안과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이러한 활동여건은 유엔한위의 독자성·중립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반면 유엔한위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미군 연락장교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셋째 이런 까닭으로 〈유엔한국위원단관계문서〉에는 유엔 공식문서·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엔한위 내부의 다양한

입장·갈등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주요한 국면마다 각국 대표들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잘 드러나 있다. 유엔한위를 구성한 나라 중 미국의 입장을 전면 지지한 중국·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와 영국블럭 소속으로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이 한국의 통일·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취한 캐나다·호주·인도·시리아 등의 입장 차이는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한국문제의 유엔소총회 회부, 남한단독선거 추진, 선거감시, 선거결과 승인 등이 이러한 대목에 해당했다.

넷째 <유엔한국위원단관계문서>에는 <서술편> 외에도 주한미군사령부가 준비한 300여개 이상의 첨부문서가 있다. 비망록, 유엔한위의 공보, 유엔한위 회의록, 유엔한위 문서, 유엔한위 각국대표·사무국원 명단, 서한, 연설문, 여론조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이 첨부문서는 해당시기 유엔한위는 물론 총선거 및 정부수립과 관련해 남한 내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 첨부문서는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결의안을 1호로 시작해서 제219호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문서 A/AC. 19/91, 1948. 8. 26>을 마지막호로 하고 있다.

다섯째 <유엔한국위원단관계문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첫째 장점은 유엔한위의 내밀한 정보와 자료제공이다. 유엔의 공식문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대변하는 다양한 문서들과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문서들이 미국측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측이 유엔한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는지 하는 점은 중요한 고비마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반면 이 문서의 단점은 객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술편>은 전반적으로 주한미군·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다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한 시기 한국문제의 국제정치적 및 국내정치적 동향을 잘 가늠하게 해주는 길잡이로서 충분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측의 보고서 이외에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문서는 다음과 같은 두 곳에 보관되어 있다. 첫 번째는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 43(RG 43) <국제회의, 위원회 및 박람회 문서(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ommission, And Expositions)> 중 <1946~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련문서(Records Relating to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6-48)>로 모두 7상자가 존재한다. 이는 1947년 11월 14일 설치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의사록과 여타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문서군에는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대표의 문서철(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총 16상자가 포함된다. 이는 제1·2차 미소공위와 관련된 미국대표의 회의록, 기자회견 발표문, 공동성명, 서한, 비망록, 전문, 보고서 및 연구서, 의사일정, 연설, 준비문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뉴욕의 유엔본부 내에 설치된 유엔문서보관소(United Nations Archives)에 소장된 문서철이다. <1947~1948년간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 문서>는 총 3입방피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뉴욕 유엔문서보관소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최초의 UN위원단으로 1946년 10월부터 1947년 6월까지 활동했던 운라위원단(UNRRA Mission in Korea)을 필두로 1950~1962년 유엔한국재건위원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 문서(252입방피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 문서(5입방피트) 등이 수장되어 있다.